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**2292** 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가. 자원봉사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인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 조항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부재하여 교육자원봉사 추진에 어려움이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.

나. 이에, 현 조례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공헌을 평가하고 격려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포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내용

가. 포상 규정 신설 (조례 제6조의2)

-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격려를 위해 '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'을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별첨 7

- 0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3조, 제4조, 제12조
- o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제8조
- 0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제11조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)
- 다. 협 의 : 감사관, 민주시민생활교육과, 예산담당관과 협의완료

라. 기 타

- o 입법안(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: (별첨 1)
- o 입법예고(2024. 9. 12. ~ 10. 3.)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별첨 3)
- 0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o 부패영향평가 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(별첨 4)
- o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(별첨 5)
- 0 학생인권영향평가 : 자치법규·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

(별첨 6)

【별첨 1】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포상) 교육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6조의2(포상) 교육감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【별첨 2】

[별지 제1호 서식]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이 조례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.

4. 작성자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행정6급 나유신(02-2230-8564)

【별첨 3】

< 별지 제5호 서식 >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제14조 관련)		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 ※ 입법예고 결과 - 입법안에 대한 "의견 제출 없음"	조 치 내 용		

【별첨 4】

[별지 제3호서식]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(제9조제2항 관련)

자 치 법 규 명	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	
평 가 담 당	감사관	항은영			
입안주무부서	평생교육과	평생교육과 통보(조치)일 2024			
관련조문	검	검토결과			
 안 제6조의2 	전토결과 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・육성하기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● 동 개정(안)은 포상규정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함 ● 따라서, 동 개정(안)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가 목적이므로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				

【별첨 5】

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					
관리번호	2024A서울교육025				
정 책 명	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				
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	
소관부서	부서명	평생교육과			
	담당자명	나유신	전화번호	02-2230-8564	
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	
담당부서	부서명	민주시민생활교육과			
	담당자명	여인진	전화번호	02-399-9546	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4년 10월 07일	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4년 10월 0	7일			
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10월 07일

자치법규 ·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

자치법규 (단위사업)	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				
담당부서	평생교육과	담당자	직급	주무관	성명	나유신 (02-2230-8564)
평가담당	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	생인권영향평가 마한얼(위원장), 김상일, 이민철, 이정현				
해당조항	검토의견					검토결과
제0조~ 제00조	검토의견 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격려를 위해, 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.				원안동의	

관계법규

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[시행 2024.2.17.] [법률 제19634호, 2023.8.16., 타법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자원봉사활동"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·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"자원봉사자" 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자원봉사단체" 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4. "자원봉사센터" 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·장려·연계·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말한다.
 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 - 제12조(포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,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4. 1. 7.]

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21.1.5.] [법률 제31380호, 2021.1.5., 타법개정]

제8조(포상)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「상훈법」에 따른다. [전문개정 2021. 1. 5.]

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[시행 2024.3.26.] [서울특별시조례 제9190호, 2024.3.26., 일부개정]

제11조(포상 등)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·학교 등 법인·단체의 장에게 취업·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